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大韓醫療氣功學會"(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이라 한다.
- 제 2 조 (사무소)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한의학 및 의료기공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의료기공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2. 의료기공기술의 수신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3. 의료기공의 교류 및 수련에 관한 사항
 - 4.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5. 외국의 의료기공학회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 한의사협 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받은 자로 하며 명예 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 승 인을 받아 추대한다.
 - 2. 정 회 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받은 자.
 - 3. 준 회 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 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2.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 3.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4.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비회원에 비해 우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자격상실 및 회복)

- 1. 회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체납회비를 불입하고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 문: 약간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명예회장: 약간명

4. 회 장: 1명

5. 수석부회장 : 1 명

6. 부 회 장 : 3 명

7. 이 사: 15 명 내외

8. 감 사: 1-2 명

제 10 조 (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학술 기획 총무 편집 홍보 교육 전산 보험 국제 연수 무임소 등의 일들을 배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 선거)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제 13 조** (임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 제 14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정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있으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 ~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 5. 총회 소집 공고는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 의결 및 보고)

- 1. 총회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2.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 의결 사항)

-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 5.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7. 기타 사항

제 19 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매 2개월마다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재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20 조 (협의회) 본 학회는 기초의학의 발전과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

- 제 21 조 (제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매년 학회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 3. 보조금 및 찬조금
 - 4. 기타 수입금
- **제 2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23 조 (보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3. 본 회칙은 1997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03년 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08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2017년 3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사항

- 1. 제 2장 5조 4항 부회장 1인을 부회장 3인으로 개정함(1997.01.).
- 2. 제 2장 5조 5항 운영위원 8명 내외를 10명 내외로 제정함(1997.01.).
- 3. 제4장 12조 2항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회장이 소집 한다"를 "4월"로 개정함(1997.01.).
- 4. 제 5장 16조 1항 "입회비"로만 명시되었던 것을 "입회비 2만원"으로 개정함 (1997.1.).
- 5. 제 5장 16조 2항 "년 회비 및 부담금"이라 명시되었던 것을 "년 회비 3만원 및 부담금"으로 개정함(1997.01.).
- 6. 제1장 1조 "기공의학분과회"에서 "의료기공분과회"로 개정함(1999.01.).
- 7. 제 5장 16조 1항 "입회비 2만원"에서 "입회비 10만원"으로 개정함 (1999.01.).
- 8. 제 5장 16조 2항 "년 회비 3만원 및 부담금"에서 "매년 학회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로 개정함(1999.01.).
- 9. 제 2장 5조 "자문위원:약간명"과 "수석부회장:1인"을 추가 개정함(2000.01.).
- 10. 제 2장 5조 "운영위원:10명내외"를 "이사:15인 내외"로 개정함(2000.01.).
- 11. 제 2장 5조 8항과 제 4장 15조 1항에서 간사를 삭제 개정함(2000.01.).
- 12. 제 2장 6조에 "이사는 학술, 기획, 총무, 편집, 홍보, 교육, 전산, 보험, 국제, 연수, 무임소 등의 일을 배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개정함 (2000.01.).
- 13. 제 4장 15조 1항, 2항, 3항의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 개정함 (2000.01.).
- 14. 제 1장 총칙과 제2장 회원에서 새로운 조목의 추가로 인해 제1장에서 제5항 까지 각 장의 조항을 개정함. 개정내용 별표 1 참조(2003.02.).
- 15. 제 1장 총칙에 제2조에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국한시키지 않게 조항을 개정함. 개정내용 별표 2 참조(2008.3.15.).
- 16. 제3장 제9조 8항 "감사:2"명에서 감사 선임에 유연성을 두고자 "감사:1-2

명"으로 개정함(2017.03.11.).

- 17. 제4장 제16조 2항 정기 총회 개최시기를 "매년 1회 1월중"에서 현실 상황을 고려해 "매년 1회 1월 ~ 3월 중"으로 변경함(2017.03.11.).
- 18. 부칙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향후 정관 개정 시 서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을 간소화함. 개정내용 별표 3 참조(2017.03.11.).

* 별표 1

대한의료기공학회 정관 개정 사항(2003.2)

수정전	수정후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한의학 회 분과학회로서 "의료기공분과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KOREAN ACADEMY OF MEDICAL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한의학의 발 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한의학 및 의료기공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 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3조 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 회 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준 회 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이 있는 자.	제5조 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2. 정 회 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 회 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자로서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었는 자로서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었는 자로서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었는 자로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4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 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원 선출에 있어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4.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을
제5, 6, 7, 8, 9조	제9, 10, 11, 12, 13조
제6조 (임원의 의무) 5. 간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제10, 11, 12, 13, 14, 15조	<u>제14, 15, 16, 17, 18, 19조</u>
제12조 (총회의 소집)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4월중 회장이 소	<u>제16조</u> (총회의 소집)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 회장이 소
집한다.	집한다.
제16, 17, 18조	제20, 21, 22조
제16조 (제정) 1. 입회비 10만원	<u>제20조</u> (제정) 1. 입회비

* 별표 2

대한의료기공학회 정관 개정 사항(2008.3)

수정전	수정후	사유
제2조 (사무소) 사무소를 서울	제2조 (사무소) 사무소를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	두고 필요에 따라	균형발전사항과 경기도의 규모
라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지부를 각 시, 도에	확대로 인해 사무소를 타 지역
수 있다.	둘 수 있다.	에도 둘 수 있게 하기 위함.

* 별표 3

대한의료기공학회 정관 개정 사항(2017.3)

수정전	수정후	사유
제9조	제9조	감사 선임에 유연
8. 감 사 : 2 명	8. 감 사 : 1-2 명	성을 둠.
제16조 (총회의 소집)	제16조 (총회의 소집)	현실 상황을 고려해 총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회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 ~	회 개최 일정을 1월~3
장이 소집한다.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월로 여유 있게 둠.
부 칙(1) 1. 본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97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본 회칙은 199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본 회칙은 2003년 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본 회칙은 2008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의 인 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97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3년 2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8년 3월 15일로 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7년 3월 11일로	용을 간소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고, 향후 정관 개정 후에도 서술을 용이하게 함.

大韓醫療氣功學會 논문 규정

목차

- 大韓醫療氣功學會誌 논문 투고 규정
- **▶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원고 투고 요령**
- 게재 신청 및 저작권 동의서

2016년 12월



🌘 大韓醫療氣功學會

大韓醫療氣功學會誌 논문 투고 규정

1. 일반 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회원으로서, 대한의료기공학회 회칙 제6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한의학 및 의료기공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 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 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출시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 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의료기공학회가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에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 후 수정이 완료된 날짜로 한다. 단, 일정은 학회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 원고 투고 요령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gigong.or.kr)에서 온라인논문 투고한다. 투고 시 원본 파일과 저자점검표, 논문 심사료도 함께 제출한다. 저자이름과 소속기관, 감사의 글(Acknowledge), 연구비지원이 기재된 원본 파일과 이들이 기재되지 않은 파일 등 2개 파일을 보낸다.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백색 용지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되는 원고의 분량에 한해서는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5-1.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5-2.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는 ①제1저자 ②교신저자 ③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저자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5-3. 초록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 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 (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Objectives):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 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2)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 3)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 4) **결론(Conclusions)**: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한의학 전문용어 혹은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국제 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한다.

※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www.wpro.who.int/publications/who_istrm_file.pdf?ua=1

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검정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 1)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 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 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

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 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 4) 약품명: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가능하다.
 - ①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h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 (例) Chungpesagan-tang
 - ②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예) 감초(炙):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 5)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 (로마자 구분 삭제됨) 예: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5-5. 그림·표

- 1) 그림(Figure)·표(Table)의 제목은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 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2)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3)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 4)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5)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 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 6) 그림(Figure)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 7)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 8)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 9) 저자가 컬러그림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5-6. 참고문헌

저자들은 원고에 포함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책임이 있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영문 작성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www.wpro.who.int/publications/who_istrm_file.pdf?ua=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초록, 미발간 연구보고, 인터넷, 신문을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끝에 "in press"를 표기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전체 인용논문 중에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2편 이상 인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6인 이내 저자의 경우 성을 앞에 쓰고 그 외는 머리글자를 쓰며, 7인 이상 저자의 경우, 차례대로 6인을 쓴 후 et al. 로 표기한다. 다음으로 논문 제목, 약자에 의거한 학술지 이름, 발간 연도, 권(호),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페이지를 기재한다.

(例1) Kim SY, Ryu BH, Park JW. Effects of Samiunkyungtang on inflammation and fecal enzymes in ulcerative colitis animal model. J

Korean Oriental Med. 2008;29(3):50-62.

(예2) Kamby C, Andersen J, Ejlertsen B, Birkler NE, Rytter L, Zedeler K, et al. Histological grade and steroid receptor content of primary breast cancer:Impact on prognosis and possible modes of action. Br J Cancer. 1988;58:480-6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국문 단행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괄호를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병기할 수 있다.다만 영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例1)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
- (예2)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6 years September 2.
 - (예3) 조기호. 한방처방의 동서의학적 해석방법론. 서울:고려의학.1999:150.
 -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 (例)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York:McGraw-Hill. 1998:2060-81.
 - 4) 학위논문(Dissertation/Thesis) : 저자명. 논문명. 석(박)사 학위논문. 학교. 도시:국가. 년도:면수.
- (예) [영문 박사] Chang, I. Biopolymer treated Korean Residual Soil: Geotechnical behavior and Applications, Ph.D. Thesi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Republic of Korea. 2010:320.

[영문 석사] Cook, Tim. Core Competence of Apple: with Focus on its Design Capability. Master's Thesi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USA. 2013:110.

[국문 박사] 전우치. 한국 전통 기공양생학파의 계보 및 역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대한민국. 2013:80. [국문 석사] 곽재우. 기공양생사상이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대한민국. 2000:120.

5)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Original Article)에 준한다.

6-1. 종설(Reviews Article/Editorial Article)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6-2. 증례보고(Case-report)

- 1)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 2) 논문의 순서는
 - 고. 제목, 저자(소속, 성명); ㄴ,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 ㄷ. 서론; ㄹ. 증례; ㅁ. 고찰; ㅂ. 요약; ㅅ. 감사의 글;
 - ㅇ. 참고문헌; ㅈ. 표; ㅊ. 그림으로 한다.
- 3)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 4)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 찰은 피한다.
- 5)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한다.

6-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밑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론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

로 제한한다.

6-5.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 한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편지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7. 논문윤리규정

7-1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의료기공학회(이하'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에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7-3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4 (기본원칙)

우리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5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그 출저를 논문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한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 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6 (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의 투고 또는 발표 신청 시에 게재신청 및 저작권 동의서 양식의 "연구 윤리"란에 반드시 체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7 (위반의 효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에서의 제명한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에게 부과되는 모든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한다.

7-8 (이의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규정 심의회를 구성・심의 하여야 한다.

7-9 (논문윤리규정 심의회)

논문윤리규정 심의회는 필요시에 구성한다.

7-10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원고 투고 요령

- 가. 투고원고는 인쇄본 1부 아래한글 97 이상의 파일이 담긴 디스켓 1장으로 한다.
- 나. 모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 글자체는 세명조, 없을 경우에는 신명조로 하되 Style 및 모든 글자형태(위첨자, 아래첨자, 진하게, 밑줄, 이탤릭체 등)을 일체 설정하지 않는다. (이름, 제목, 본문 모두 포함)
- 다. 글자체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위첨자, 아래첨자, 진하게 밑줄, 이탤릭체 등) 인쇄본 원고에 붉은색으로 밑줄표시를 하여야 하며 File에서는 일반문자 형 태로 둔다. (각주번호의 경우도 표시할 것)
- 라. 논문제목, 발표자명, 영문제목, 발표자 영문표기, 영문초록, 본문 등의 순서 는 기존의 학회지 발표 논문을 참고하여 엄수하여야 한다.
- 마. 게제자의 소속을 국문의 경우는 *를 사용하여 각주의 양식을 따라 하단에 표기되도록 한다.
- 바. 모든 영문 표기는 표준 영문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사. 중간점(·)은 ^F10을 하여 전각기호 일반에 나오는 것으로 한다.
- 아. 모든 논문은 한글 및 영문 key word를 첨부한다. 용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 : 기공, 정경, 기경, Gi-Gong, Regular meridian, Extra meridian 등)
- 자. Numbering에 있어서 다음 순서를 따른다. (III 1.2. 1)2) (1)(2) 1(2) 가.나. 가)나))
- 차. 모든 문단은 들여 쓰기 등의 조정을 일체 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잘못은 문단 앞에 스페이스를 넣어 처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편집 시 일일이 교정을 보아야 하므로 아주 힘들다.)
- 카. Table은 가능한 도표 기능을 이용해 작성한다.
- 타. Fig. 등 그래픽으로 작성된 것이 삽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파일과 같이 그래픽 파일도 제출한다.
- 파.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석은 각주로 하도록 한다.(미주 허용 안함)
- 하. 참고문헌은 저자. 서적명. 지역:출판사명, 발행년도:쪽수의 순으로 기록한다.
- 갸. 논문의 페이지 수는 상기방식을 적용하여 20~30 페이지 내외가 일반적이다.

게재 신청 및 저작권 동의서

제 목		
저 자		
	저 자 점 검 표	
항 목	내용	체크
총0	원고의 파일명을 저자이름.hwp, 혹은 저자이름.doc로 하였으며 원고가 다수인 경우는 저자이름(간단한 내용).hwp(혹 doc)로 하여 송부하였다. 원본 1부, 저자 및 소속 삭제한 복사본 1부, 사진원본(필요한 경우)을 함께 보냈다. 한글(이나 영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는 본문뿐 아니라 영문초록, 참고문헌, 표, 그림, 설명문을 포함한 전체를 두 줄 간격(아래한글 160%)으로 A4용지에 인쇄하였다. 원고는 표제지, 영문초록과 Key Words, 본문, 감사의 말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표·그림 및 그림의 설명문 순서로 구성하여 작성하되, 표, 그림 등은 필요 시 본문에 삽입하였다. 원고의 표지를 1페이지로 하여 각 면에 일련번호를 매겼다. 약자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제목에는 약자를 쓰지 않았고, 본문에 서는 처음 나올 때에 괄호 속에 약자를 표기하였고, 표와 그림 설명문의 약자는 이들의 하단에 설명하였다. 표지 이외에는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약물명이나 방제명은 이탤릭체로 하였다(영문만).	
표 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였다. : 국문 및 영문 논문 제목, 국문 및 영문 저자명, 국문 및 영문 저자 소속 기관명, 교신저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및 Fax번호, E-mail address), 연구비 지원 기관.	
원저의 영문 초록양식은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의 제목 및 순서로 단락을 나누어 작성하였다. 경문초록 초록은 원저의 경우 250단어 이내, 증례 및 단신보고의 경우 1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개 이상 6개 이하의 Key Words를 첨부하였다.		
참고문헌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최신 논문과 『대한의료기공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등 국내 학회지를 모두 검색하였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고, 인용된 본문에 각주로 표시하였고, 참고문헌란에 인용순으로 중복 삭제하여 정리하였다. 잡지명은 Index Medicus의 약어로 표기하였다. 참고문헌은 표기방법과 구두점 등이 투고규정과 맞는지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중 공저인 경우 모든 저자를 명기하며, 영문 저자 표기방법으로 성을 먼저 쓰고 다음에 이름의 Initial만 적었다.	
형식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丑	표의 제목은 간결하고 설명적이며 표의 상단과 그림 하단에 위치하였다.	
	표에 사용된 약어는 하단에 따로 설명하였다.	
	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이나 그림의 자료를 중복 나열하	
	지 않았다.	
	표의 숫자가 정확한지 재차 점검하였고, 본문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하고 각 단어의 첫 철자는 대문자로 하였다.	
그림	그림이나 사진을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	
	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하였다(필요시 원본제출).	
	그림 설명문은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	
	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였고 문장은 마침표로 종결하였다.	
	그림 설명문은 단순히 제목만 쓰지 않았고,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연구윤리	논문투고규정 7. 논문윤리규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였다.	

* 이 논문(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을 게재 신청합니다.

저자들은 이상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이 점검표를 원고와 함께 보냅니다.

본 논문이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 이전합니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합니다. 저자는 대한의료기공학회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으면 타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 논문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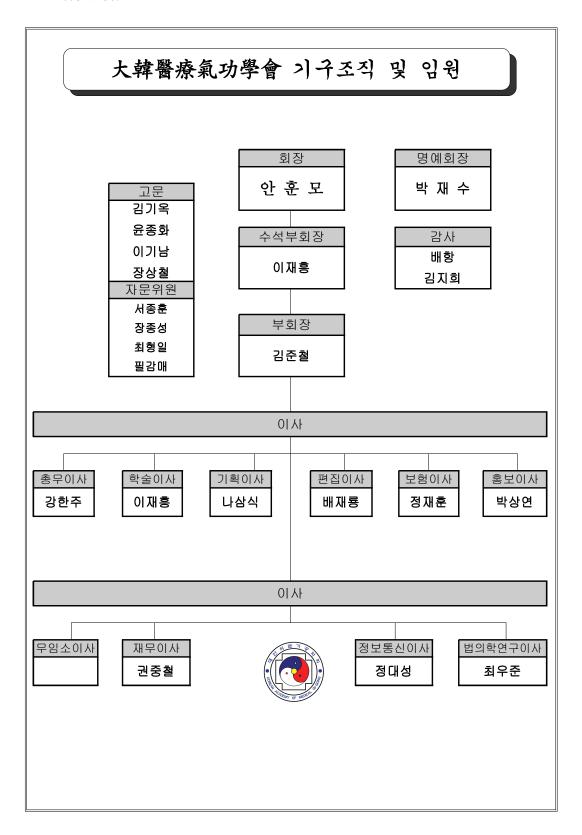
저자들은 모두 이 논문의 작성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원고 내용에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심사되지 않고 곧바로 반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은 이전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을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의 성명 및 서명

책임저자 :	(인)
교신저자 :	(인)



第 17 卷 第 1 號

Vol.17, No.1 2017.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17. 12. 29. 印刷 2017. 12. 31. 發行

發行人 안 훈 모

編輯委員 이 기 남

김 기 옥

박 재 수

필 감 매

정 명 수

學術理事 이 재 흥

發 行 處 大韓醫療氣功學會

인쇄 : 한국학술정보 (031) 940-1118

본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19

TEL: (031)999-2222